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32271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결정 취소 등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7. 12. 14. 선고 2016구합9923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4. 24.
판 결 선 고	2018. 5. 2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1. 1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**제1심판결서 7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**

원고는,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,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는 장부의 원장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데 부정적인 원고의 거래처 법인들이 원고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그 원장 대신 제출한 것이므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위 관련 규정들에서 본 바와 같이, 법인이 작성한 문서라 하여 모두 법인장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, 법인장부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장·보조장·출납전표·결산서를 의미하므로,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세금계산서,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원고는,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이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'이란 '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', '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등을 합한 금액'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법인장부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'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'과 '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'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므로, 구 지방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곧 법인장부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.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원고는 또한, 원고와 거래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장부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,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된 원장·보조장·출납전표·결산서가 법인장부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○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6행 '상당하다'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[원고는 [redacted]에 5,126,871,520원을 송금하였고 [redacted]와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,128,060,000원이므로 1,188,480원이 부족할 뿐이어서 공사대금과 지급금액이 미미한 차이가 날 뿐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[redacted]의 거래처원장에 의한 공사대금은 4,661,872,727원(부가가치세 제외)이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공사비합계표에 의한 공사대금은 50억 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서, 설령 원고가 [redacted]로부터 합계 516,000,000원을 이체받은 것이 원고가 [redacted]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원고가 송금한 금액과 [redacted]와의 공사대금은 126,871,520원(5,126,871,520원-5,000,000,000원)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 거래처원장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]

○ 제1심판결서 10쪽 4행 '상당하다'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[원고는 D에 7,759,825,000원을 송금하였고 D과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,756,773,500원이므로 3,051,500원을 추가지급하였을 뿐이어서 공사대금과 지급금액이 미미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D의 거래처원장에 의한 공사대금은 7,051,528,017원(부가가치세 제외)이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공사비합계표에 의한 공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사대금은 7,755,480,819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어서, 원고가 송금한 금액과 D과의 공사대금은 4,344,181원(7,759,825,000원-7,755,480,819원)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 거래처원장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 또한 원고는 지급금액과 공사대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]

○ **제1심판결서 10쪽 9행 '일응'을 삭제한다.**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